

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

① 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
	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(전화번호:)	

② 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
③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(=⑩ + ⑭)		

가. 내국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 (=⑩)

	⑥대상국	⑦투자 또는 출자 금액	⑧광업권·조 광권 평가금액	⑨공제대상 금액	⑩ 공제세액 (= ⑨×3/100)
광업권·조광권의 취득					
외국법인에 출자					

나.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 (=⑭)

	⑥대상국	⑦투자 또는 출자 금액	⑧광업권·조 광권 평가금 액	⑪출자 또는 대여금액	⑫투자 비율	⑬공제대상 금액	⑭ 공제세액 (=⑬×3/100)
광업권·조광권의 취득							
외국법인에 출자						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4조의15제6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없 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	-----------

작성 방법

- "⑥대상국"란: 광업권·조광권의 소재지나 외국법인 또는 외국자회사의 소재국을 적습니다.
- "⑦투자 또는 출자 금액"란: 광업권·조광권을 취득하거나 외국법인에 출자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"⑪출자 또는 대여금액"란: 내국인이 외국자회사에 투자(출자, 대여 포함)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"⑧광업권·조광권 평가금액"란: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 또는 외국자회사가 소유한 광업권·조광권의 평가금액을 적습니다.
- "⑨공제대상금액"란: "⑦투자 또는 출자 금액"란과 "⑧광업권·조광권 평가금액"란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.
- "⑫투자비율"란: 내국인과 공동으로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.
- "⑬공제대상금액"란: ⑦, ⑧, ⑪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. 다만, 내국인과 공동으로 내국인의 자회사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⑫을 곱한 금액[Min(⑦, ⑧, ⑪) × ⑫]을 적습니다.